

강원도 이렇게 달라집니다

“ 갑오년(甲午年)
달라지는
시책·제도 ”

2014



강원도
GANGWON PROVINCE

일러두기

이 보고서는 「2014년도 달라지는 시책·제도」를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써, 이해하기 쉽게 서술·개조식으로 작성하였으며, 보기에 편하도록 시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컬러로 편집하였습니다.

차 례



“ 총 6개 분야, 78개 시책

I 나눔과 배려의 교육·복지 (15) / 3

II 지속성장의 강원경제 기반조성 (11) / 21

III 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 (18) / 35

IV Green·Safe 강원도 만들기 (11) / 57

V 정주기반 조성, 지역발전 추진 (14) / 71

VI 도민 편의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(9) / 89

I

나눔과 배려의 교육·복지

1.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지원을 강화합니다. / 5
2. 「통합문화이용권(문화·여행·스포츠관광)」이 시행됩니다. / 6
3. 기초생활급여,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합니다. / 7
4.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달라집니다. / 8
5. 어르신을 위한 「효도택시」를 시범운영 합니다. / 9
6.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합니다. / 10
7.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기준 및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. / 11
8. 장애인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. / 12
9. 「이동·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」 실시합니다. / 13
10. 가까운 보건기관에서 원격건강관리를 받으세요. / 14
11. 치매질환의 예방과 재활을 도와드립니다. / 15
12. 결핵환자 화상원격관리가 시행됩니다. / 16
13. 우울증 검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 / 17
14. 찾아가는 산전관리·부인과 진료를 받으세요. / 18
15. 미용업종에 미용업(손톱·발톱)이 신설됩니다. / 19

1

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지원을 강화합니다.

[자체사업]

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(☎033-249-3697)

-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뒷받침하고 자녀들의 학업능력 증진과 동등한 교육 참여를 위해 지원합니다.

■ 북한이탈주민자녀의 학원 수강료와 수학여행경비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- * 초·중·고 재학생 학원비(교과목, 예체능) : 초등(7만원), 중등(10만원), 고등(13만원)
- * 초·중·고 재학생 수학여행경비 : 초등(10만원), 중등(15만원), 고등(20만원)

- 신청절차 : 주소지 시·군 북한이탈주민 담당부서 직접 방문 신청
- 춘천시, 원주시, 동해시는 하나센터 방문 신청
- 문의안내 : 거주지 시·군청 북한이탈주민 담당 부서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14년 첫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(학원비) 지원 - 신청주의, 연간 1인 1수강 지원, 한도외 금액 자부담 원칙 ▪ 북한이탈주민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 - 신청주의, 연간 1인 1회 지원, 타기관 기 지원시 부족액만 지급 한도외 금액 자부담 원칙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함께 학업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2

「통합문화이용권(문화·여행·스포츠관람)」이 시행됩니다.

[문화체육관광부]

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(☎033-249-3319)

- 문화, 여행, 스포츠관람이 '통합문화이용권' 카드 1장으로 가능합니다.
- 만6세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발급연령도 확대됩니다.

■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
- 신청기간 : 2014년 2월부터 신청 가능(예정)
- 신청절차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지원내용
 - (문화) 공연·전시·영화 관람, 도서·음반 구입 등
 - (여행) 국내여행, 숙박시설, 기차표 구입 등
 - (스포츠 관람)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이용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문화이용권, 여행이용권, 스포츠관람 이용권 별도 발급 ▪ 3개 이용권별 범위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1장으로 발급, 3개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
이용 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3개 이용권별 카드 금액 상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 : 세대당 5만원 + 청소년 추가발급 - 여행 : 개인당 15만원(가구당 2인) - 스포츠 관람 : 가구당 12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세대당 10만원 + 청소년 추가발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대내 청소년 개인(최대 5명까지) 5만원씩 추가발급
청소년 발급 연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만10세~19세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정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만6세~만19세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정)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2월(예정)

3

기초생활급여,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합니다.

[보건복지부]

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(☎033-249-2668)

-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급여체제로 개편하여 지원합니다.

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근로능력여부·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
- '14년 최저생계비

연도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평균인상율
2014년	603,403	1,027,417	1,329,118	1,630,820	1,932,522	2,234,223	2,535,925	5.5%

- 신청절차 : 가구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신청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현행		→	개편 후	
선정기준	급여수준(내용)		선정기준	최저보장수준(내용)
최저생계비	최저생계비의 80%수준 현금급여 (현물급여 등 제외)	생 계 주 거 의 료 교 육	중위소득 30% 수준	중위소득 30% 수준*
	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(현물급여)		중위소득 43% 수준	지역별 기준임대로
	수업료, 교과서대 등 (현물급여)		중위소득 40% 수준	현행과 동일
			중위소득 50% 수준	현행과 동일

*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~중위30%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수급자의 특정 급여가 소득기준 초과로 중지되어도 타 급여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빈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0월

4

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달라집니다.

[보건복지부]

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팀 (☎033-249-2511)

-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 지원

■ 기초연금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만 65세 이상 어르신
※ 생일달부터 신청 가능
- 신청기간 : 연중
- 신청절차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선정기준 : 소득하위 70%, 만 65세 이상 어르신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기초노령연금(현행)	기초연금(2014.7월이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 준 :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 준 : 소득하위70% 만 65세 이상 어르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금수급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독가구 : 20,000원 ~ 96,800원 - 부부가구 : 20,000원 ~ 154,9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금수급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천원 ~ 200천원의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인상된 연금액 수급으로 생활이 더욱 향상 됩니다.

■ 언제부터 달라지나요? 2014년 7월

5

어르신을 위한 「효도택시」를 시범운영 합니다.

[자체사업]

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팀 (☎033-249-2519)

- 2012년부터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도교통편익서비스 사업 외에 2014년도에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효도택시 방식의 이동편의서비스 시행

■ 교통수단은 어떻게 이용하나요?

- 운영대상 :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
- 운영시군 ※ 운영기관(노인돌봄서비스지정기관)
 - 효도교통편익서비스 : 5개 시군(춘천, 횡성, 영월, 고성, 양양)
 - 효도택시 운영 : 4개 시군(원주, 삼척, 홍천, 평창)
- 사용목적 : 병원진료, 건강검진, 공공기관방문에 한함
- 이용방법
 - 효도교통편익 : 지정기관별 차량 및 기사확보 ⇨ 차량무료제공
 - 효도택시 : 택시이용권(쿠폰) 지급, 연 4만원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효도교통편익 서비스 제공('12. 5월~ 현재) - 춘천, 횡성, 영월, 고성, 양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4개 시군에 효도택시 방식의 새로운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- 연4만원 택시 이용권(쿠폰) 지급 ※ 5개 시군에서 실시중인 효도교통편익 서비스 지속 추진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효도교통편익서비스와 효도택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강화 합니다.
- ⇨ 향후 하반기 성과분석 후 지속 및 확대 여부 판단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3월 ※ 교통편의 서비스(2014년 1월)

6

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합니다.

[자체사업]

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(☎033-249-2676)

-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통한 노인의 여가문화 향상 도모

■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사업대상 : 경로당 1,000개소 (노인복지관이 미설치 8개 시·군)
 - ※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
- 사업내용 : 경로당 프로그램운영비 지원(강사료 등)
- 사업기간 : 농한기 5개월(1~3월, 11~12월)
- 사 업 비 : 350백만원(도비 7백만원, 시군비 280백만원)

■ 어떻게 운영하나요?

구 분	지원내용
교육대상	1,000개소(노인복지관 미설치 8개 시·군)
운영횟수	개소 당 총 10회(5개월, 월 2회)
운영일정	2014.1.1~3.31, 11.1~12.31
운영방법	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는 시·군 여건에 따라 자율 선정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교양 강좌를 통한 정서함양과 문화 욕구 충족 및 자아실현 도모 등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7

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기준 및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.

[보건복지부]

경로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(☎033-249-2415)

-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 영위 도모 및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·자립 여건 조성

■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이 무엇인가요?

- 신청자격 : 1·2급 및 3급 중복장애인
- 수급자선정 :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기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
 - ※ 단독가구 580천원, 부부가구 928천원 이하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준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지원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%수준 이하에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%수준 이하로
기초 급여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초,차상위,차상위초과(18~64세) = 96,800원 ▪ 부가급여(18~64세) = 2만~ 8만원 부가급여(65세 이상) = 4만~17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초,차상위,차상위초과(18~64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1월~3월 = 96,800원 4월~6월 = 99,900원 7월~12월 = 200,000원 ▪ 부가급여는 동일 ※ 기초급여는 입법예고를 마쳤으며, 부가급여는 '14년 상반기 시행령 일부 개정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? 2014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

8

장애인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을 지원합니다.

[보건복지부]

경로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(☎033-249-2867)

- 장애부모(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)를 둔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
■ 언어발달지원은 어떻게 신청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부모가 장애인인 비장애 아동
- 신청기간 : 연중
- 신청절차 :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선정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이하(4인 기준 4,736천원)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령 기준 : 만 18세 미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만 10세 미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모 기준 : 양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장애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장애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서비스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- 언어치료·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놀이지도, 수화지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서비스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어재활·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수화지도(‘논술지도’·‘학습지도’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)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대상자 확대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가족 기능이 강화됩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9

「이동·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」 실시합니다.

[여성가족부]

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팀 (☎033-249-3531)

-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·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■ 이동·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?

- 신고수리 주체 : 활동 주최자 소재지 도·시·군(청소년정책 담당 부서)
- 사전신고 주체 : 개인·임의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서,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
- 신고 기한 : 모집 시작 최소 14일 전
- 신고프로그램 : 19세 미만의 청소년(9세~18세)
 - *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으로 기획된 경우도 신고대상
- 신고대상 청소년활동
 - 이동숙박형 : 숙박 장소를 이동하여 숙박·야영하는 활동
 - 고정숙박형 : 동일 장소에서 숙박·야영하는 활동
 - 신고 제외 활동 : 비숙박 활동(당일형, 정기형)
 - * 당일형(시작당일 종료), 정기형(2회 이상 실시)

■ 사전신고제 추진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?

구 분	주 요 내 용
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동·숙박형 활동계획 접수 및 수리 ▪ 사전 신고 현황 제출 및 관리 ▪ 미신고자 및 부정 신고자 확인 및 규제 ▪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
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전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▪ 정보공개사이트(www.youth.go.kr) 운영 ▪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
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전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▪ 청소년활동 불편사항 등 접수 모니터링 ▪ 신고지원반 설치 및 운영(사전신고 교육, 청소년활동 모니터링)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3년 11월 29일

10

가까운 보건기관에서 원격건강관리를 받으세요.

[보건복지부 시범사업]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(☎033-249-2421)

- 병·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에 가시면 질환상담, 관리, 처방지원 등 의사와 원격으로 건강관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원격 건강관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?

- 대상 : 만성질환자, 대사증후군 및 건강증진 요구자 누구나
- 서비스 기관 : 도내 보건기관 148개소(보건소 16, 보건지소 42, 보건진료소 90)
- 대상 : 치매 (등록 환자)
- 서비스 기관 : 12개 보건소(정신과 의원이 없거나 전문인력 부족 지역)
(홍천, 횡성, 삼척, 고성, 양양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평창, 정선, 영월)

■ 몸도 아픈데, 멀리있는 병의원 찾아가는데 힘드셨죠?

- 고혈압, 당뇨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- 가까운 보건진료소에 가시면, 원격으로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상담과 약을 받으시면 시간이 절약되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- 치매는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,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만성질환은 약복용과 운동, 영양관리를 병행하면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.
가까운 보건기관에서 상담해 보세요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9월

11

치매질환의 예방과 재활을 도와드립니다.

[자체사업]

보건정책과 질병관리팀 (☎033-249-2667)

-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인지기능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도내 전 시·군으로 확대 제공합니다.

■ 인지재활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?

-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지기능(지남력, 기억력, 주의집중력, 실행 및 판단기능, 문제해결력) 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문제행동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(작업치료, 일상생활지원, 원예, 미술, 음악, 운동, 회상 등)을 적용한 비약물치료.

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
- 서비스대상 :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(고위험군) 진단자
- 신청방법 : 각 시·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문의 접수
※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기능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 : 2014년 1월부터 시행 (보건소별 세부일정 문의)

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?

- 재활 및 작업치료 전문강사가 제공하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최소 주1회 보건소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받게 됩니다.
- 서비스 방식은 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내소하여 참여하게 됩니다.

■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가요 ?

- 최상의 치료는 예방입니다. 치매는 간단한 약물·비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의 출현이나 악화를 현저히 지연시키며, 발병 위험인자(대사성·혈관성질환, 뇌손상, 우울증 등)를 조절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.
* 치매는 발병이나 진행을 2년만 지연시키면 20년후 유병률은 80%수준으로 감소하며, 초기 약물치료를 하면 요양시설 입소율은 55% 감소하게 됩니다.

[자체사업]

보건정책과 방역관리팀 (☎033-249-2671)

- 도 결핵관리 의사(결핵전문의)와 보건소를 화상연결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결핵환자에게 전문의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■ 결핵 화상원격관리 왜 필요한가요?

- 도내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결핵관리 의사의 부재
 - * 종합병원에서 80% 이상의 결핵환자를 관리하며, 도내 농어촌지역의 결핵환자가 도시지역의 병원을 정기적인 방문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치료·관리
- 도내 70대 이상 노인결핵환자는 248명(10만명당)으로 평균 83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
 - * 도내 노인인구가 15.7%(전국 3위)로 노인계층을 위한 전문서비스가 필요
- 시간적·지리적 제한으로 종합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와 단순투약관리만 필요한 환자에게 근처의 보건(지)소에서 결핵관리 가능(공중보건 의사 ↔ 도 결핵협회 전문의와 진료상담)

■ 결핵환자 화상원격관리는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.

- 보건(지)소 ↔ 결핵협회 강원도지부(복심자의원)
 - * 보건소의 결핵관리 의사와 결핵협회 결핵전문의를 연계하여 결핵관리 의료지도
 - * 보건소에 결핵환자가 미리 의료상담 예약하여, 도 결핵관리 의사(결핵전문의)와 연결하여 흉부 X-ray 및 진료관리기록(원격판독시스템 및 질병보건통합시스템)을 확인하며 보건소 공중보건 의사와 전문적인 의료진료 지도 상담 가능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5월(예정)

13

우울증 검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

[자체사업]

보건정책과 질병관리팀 (☎033-249-2962)

- 우울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우울증 검진은 집에서 가까운 시·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받아보세요

■ 우울증은 무엇인가요?

● 우울증이란?

우울증이란 우울장애로 우울감과 의욕의 저하로 인하여 다양하게 인지 및 일상생활의 기능자체를 저하시키는 질환임

- 우울증 원인 : 유전적, 화학적,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요인
- 우울증 증상
 - 삶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며,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낌
 - 수면장애와 식욕감소 및 체중저하가 발생함
 - 항상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낌
 - 집중력 저하가 발생함

■ 우울증 예방법은 이렇습니다.

-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동료나 주위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긍정의 힘!!!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합니다.

■ 우울증검진은 어디서 받나요?

- 우울증 검사는 시·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4

찾아가는 산전관리·부인과 진료를 받으세요.

[자체사업]

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(☎033-249-2674)

- 산부인과 병·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 임신부 산전관리(여군 포함) 및 부인과질환 진료실을 운영합니다.

■ 찾아가는 산부인과·부인과 운영지역은 어디인가요?

- “찾아가는 산부인과” 운영 지역 : 5개군 보건소(정선, 양구, 인제, 고성, 양양)
- “찾아가는 부인과” 운영 지역 : 인제·고성·정선군보건소(고한사복지소 별도)

■ 산전관리·부인과질환 진료는 이렇게 운영됩니다.

- 찾아가는 산부인과 : 월 2~3회 이동검진 차량 운영 보건소별 검진
 - 검진기관 : 인구보건복지협회
 - 검진내용 : 산전진찰, 뇨·혈액검사, 태아기형아·초음파 검사 등
 - 2014년에는 도내 거주 임신한 여군들에게도 산전관리 서비스 제공 및 난임부부 지원 등 저출산·모자보건사업 홍보 강화
 - *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보건소 담당자 지정 여군(임부) 특별관리,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시 사전 진료예약서비스 등 우호적 진료환경 제공
- 찾아가는 부인과 : 주 1회 보건소별 순회 방문진료
 - 검진기관 : 정선군(인구보건복지협회) / 인제·고성(속초의료원)
 - 검진내용 : 자궁암 및 부인과질환 검사 등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군지역 임신부(여군 포함)의 정신적·경제적 부담 경감
-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접근 소외지역의 여성 건강증진 도모

15

미용업종에 미용업(손톱·발톱)이 신설됩니다.

[보건복지부]

식품의약과 위생관리팀 (☎033-249-2428)

- 기존 미용업(일반)에서 제공하던 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하는 서비스를 미용업(손톱·발톱)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종을 세분화 하였습니다.

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미용업의 종류	<p>가. 미용업(일반) :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,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,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,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</p> <p>나. 미용업(피부) :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·피부관리·제모(除毛)·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</p> <p>다. 미용업(종합) : 가목 및 나목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</p>	<p>가. 미용업(일반) : 파마·머리카락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감기,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,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</p> <p>나. 미용업(피부) :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·피부관리·제모(除毛)·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</p> <p>다. 미용업(손톱·발톱) :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하는 영업</p> <p>라. 미용업(종합) :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</p>

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최근 미용업 중 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하는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,
-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하는 서비스 외에 머리카락자르기 등이 포함된 자격을 갖추어 미용업(일반)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특화·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에 맞게 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하는 미용업 분야를 별도의 미용업(손톱·발톱)으로 신설함으로써,
- 미용업의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,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·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.

※ 경과조치 :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(일반) 및 미용업(종합)의 신고를 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(손톱·발톱) 및 미용업(종합)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.

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? 2014년 7월 1일

Ⅱ

지속성장의 강원경제 기반조성

1. 소상공인 이차보전(행복씨앗드림)을 지원합니다. / 23
2.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지정시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. / 24
3. 사회적경제 「선도기업」을 선정·지원해 드립니다. / 25
4.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. / 26
5. 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상 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. / 27
6. 기업간 기술융·복합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. / 28
7. 「청년창업 사후관리」 도입으로 성공창업을 돕겠습니다. / 29
8. 국내복귀기업이 도내 이전시 지원혜택이 확대됩니다. / 30
9.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이 개선됩니다. / 31
10. 투자유치성과금 지원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. / 32
11.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. / 33

1 소상공인 이차보전(행복씨앗드림)을 지원합니다.

[자체사업]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(☎033-249-273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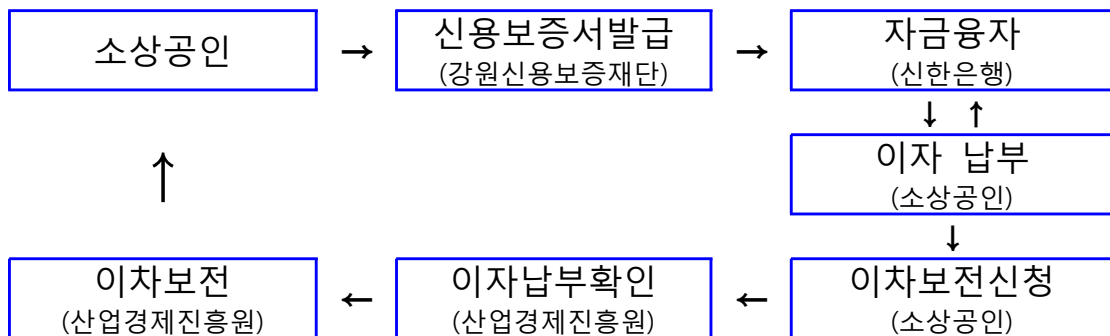
-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이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“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”을 지원합니다.
※ 도와 신한은행 MOU협약 체결('13.8월) → 신한은행 5억원 출연

■ 행복씨앗드림이란?

- 사업기간 : 2014 ~ 2015 (2년)
- 대출규모 : 60억원 (출연금의 12배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출보증)
- 대출대상 : 도내 영세 도·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 등 (2천만원 한도내)
- 대출금리 : 4.8%(변동금리), 1년 거치 2년 상환
- 지원내용 : 대출금리 중 2%, 2년간 지원

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: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위탁 시행



- 대출은행 : 신한은행 (강원도 소재 신한은행 본부 및 지점)
- 지원시기 : 매분기말(3, 6, 9, 12월) 5일까지 신청순 접수 후 이차지원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도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2

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지정시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.

[고용노동부]

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(☎033-249-3224)

- (예비)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
■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무엇을 지원받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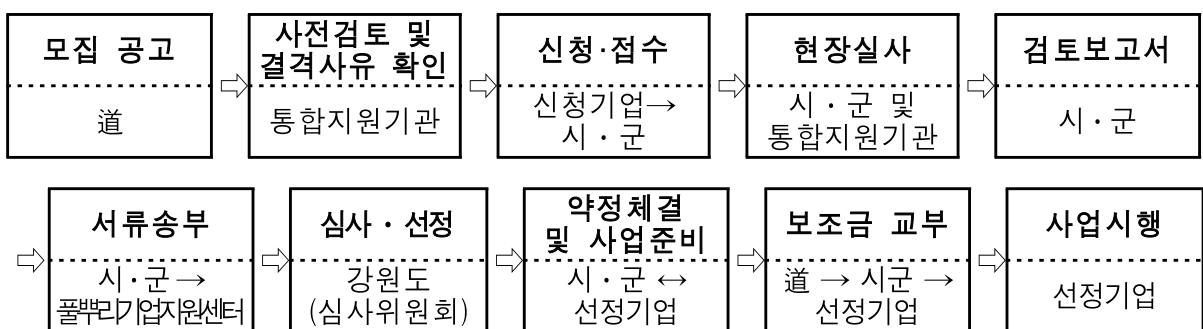
- 인건비 지원 : 1인당 월 1,187천원(기업당 최소 1인 ~최대 50인 범위)
※ '13년 인건비 지원 : 1인당 월 1,107천원

☞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: 1년차 90%, 2년차 80%
☞ 인증사회적기업 지원을 : 1년차 80%, 2년차 60%, 3년차 50%
⇒ 1년 단위 재심사, 최대 5년까지 차등 지원(최저임금 + 4대 보험료)

- 사업개발비 지원 :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내,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내
 - 사용용도 : 브랜드 개발, 판로개척, 홍보·마케팅 사업 등
- 시설비 지원 : 기업당(인증, 예비) 2천만원 내
 - 사용용도 : 소규모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자본재 구입

■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어떻게 지정받을 수 있나요?

- 2014년도 연간공모계획에 의거 사업선정 지원(1~3차 공모)
- 공모절차



■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나요?

-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(070-8224-2543) 및 권역별 컨설턴트
-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(033)249-3224 및 시·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3년 12월

3

사회적경제 「선도기업」을 선정·지원해 드립니다.

[자체사업]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(☎033-249-2779)

◦ 도내에는 21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「사회적 목적실현」을 위해 설립·활동 중으로 강원도형 기업 및 특화상품을 공모·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.

※ 총 219개 : 사회적기업 132(인증 43, 예비 89), 마을기업 87

■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요?

- 지원대상 :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
- 지원요건
 - 자본금 5천만원 또는 매출액 2억원 이상인 기업
 - 자립화 진입단계 기업(재정지원 종료기업, 인증전환 준비기업 등)
- 신청시기 : 선도기업 육성사업계획 공고 후 접수(공모사업)
 - ※ 절차 : 사업계획 공고·접수(3월) → 심사·기업선정(4~5월)
→ 기업별 지원 및 사후관리(5~12월)

■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지원규모 : 20백만원, 5개 기업 내외 * 총 사업비 100백만원
- 지원내용
 - 사업개발비(기술개발, 시제품, 인증 등), 시설비 지원
 - 교육·컨설팅 및 홍보·마케팅 지원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 발굴·홍보로 파급효과가 배가되며
- 강원도형 사회적기업과 주력 상품을 육성하여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4

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.

[자체사업]

기업활성화와 판로지원팀 (☎033-249-3213)

-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공사·용역을 더 많이 구매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■ 여성기업과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나요?

- 여성기업 :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
 -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대표임원으로登記되어 있는 회사
 -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
 ※ 확인 :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smpp.go.kr)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
- 공공기관 :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·출자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

■ 어떻게 달라지나요?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발주·구매하는 공사·용역, 물품의 일부 (3~5%이상)를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 ⇒ 공공기관에 권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발주·구매하는 총공사의 3%이상, 총용역·총물품의 5%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 ⇒ 공공기관 의무 구매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 경영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5

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상 애로를 해소해 드립니다.

[자체사업]

기업활성화와 기술지원팀 (☎033-249-3221)

- 정부출연연구기관(산업기술연구회)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상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.
- ※ 도와 산업기술연구회 협력체결('13.10월) → 도내 기업 참여 확대 도모

■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지원대상 : 도내 중소·중견기업
- 신청기간 : 2014년 1월부터
- 신청방법 :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서비스정보망(<http://help.istk.re.kr>)을 통해 접수 → 애로사항 진단 → 지원여부 결정
- ※ 애로사항 진단은 '산업기술연구회소속 기술코디네이터'가 수행함.

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- 지원내용 : 전문연구원을 기업과 매칭하여 기술애로사항 해소
 - 단기과제(3개월이내, 1천만원이내), 장기과제(6개월이내, 4천만원이내)
- 참여기관 :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(14개)
- 예산부담 : 국비(80~90%), 자부담(10~20%) * 중견기업(20%)
 - 중소기업 : 매출액 100억 초과(15%자부담), 매출액 100억 이하(10%자부담)
- ※ 도내 참가기업은 사업비 중 5%를 도비로 보전 → 기업부담분 축소 예정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도내 기업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지원사업 참여가 확대되고,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6

기업간 기술융복합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.

[자체사업]

기업활성화과 기술지원팀 (☎033-249-3221)

-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간 기술융복합 과제 발굴과 정부 R&D 참여를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.

■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란?

- 운영경위 :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개시('13.5월)
- 운영주관 :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(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)
- 운영기간 : 2013. 5월 ~ 2015. 5월 * 추후 연장운영도 가능
- 주요활동 : 기술융복합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회 및 멘토링그룹 지원 등
 - 융·복합 R&D기획 멘토링그룹 지원, 융합과제발구연구회 지원
 - 융합관련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융합전문인력 매칭,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

■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신청시기 : '14년 상·하반기 공모 (상반기 3~4월, 하반기 8~9월)
 - 단, 신청시기는 추후 변경 가능
- 신청자격 : 신청자격 요건 등은 공모계획에 포함 예정
- 신청절차 :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(smtcs.or.kr) 접속 → 회원가입
→ 신청시 권역은 강원권으로 선택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도내 기업간의 기술 융복합과제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R&D 참여를 확대하고, 융합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7

「청년창업 사후관리」 도입으로 성공창업을 돕겠습니다.

[자체사업]

기업활성화와 창업지원팀 (☎033-249-2756)

- 「청년창업 육성사업」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참가자들의 성공창업을 돕겠습니다.

■ 사후관리는 왜 하나요?

- 도에서 2010년부터 매년 지원하는 「청년창업 육성사업」 창업자들이 사업기간 종료 후 생존율 급속히 저하
 - 사업추진 4년차 현재 지원인원은 늘어난 반면 사업중단, 휴·폐업 및 매출저조 등 창업성공률이 떨어지는 추세
- ⇒ 사업종료 이후 교육 등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

■ 사후관리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지원대상 : 2010년 이후 청년창업 육성사업 참여자
- 지원내용
 - 사업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교육 지원
 - 창업 노하우 전수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
 -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제공
 - 제품 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매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「청년창업 육성사업」 참가자들의 성공률 향상 기대
- ⇒ 도내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립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8

국내복귀기업이 도내 이전시 지원혜택이 확대됩니다.

[산업통상자원부]

투자유치담당관 기업유치팀 (☎033-249-2856)

- 국내복귀(U턴)기업도 수도권 이전기업 수준의 입지·투자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.

* 국내복귀기업이란,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을 청산 또는 감축하고 국내투자로 복귀하는 기업을 의미

■ 지원 대상기업은?

-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도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
-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도내에 사업장을 신·증설하는 경우
-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 고용인원 또는 생산물량을 50% 이상 감축하고 도내에 생산시설을 신·증설하는 경우

■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입지 보조금 : 분양가·임대료의 10~45% 보조(국비 5억원 한도)
- 투자 보조금 : 설비투자금액의 3~20% 지원

구 분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수도권 인접지역 (원주, 홍천)	입지(-) 투자(3%)	입지(-) 투자(5%)	입지(10%) 투자(7%)
일반지역 (강릉, 속초, 동해)	입지(-) 투자(5%)	입지(15%) 투자(7%)	입지(35%) 투자(10%)
성장촉진·특수상황지역 (그외 시군)	입지(-) 투자(7%)	입지(25%) 투자(15%)	입지(45%) 투자(20%)

- 법인·지방소득세 감면 :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- 고용보조금 : 기업당 최대20명까지 1인당 720만원(1년간)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3년 12월

9

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이 개선됩니다

[산업통상자원부] 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정책팀 (☎033-249-2943)

-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로 설비투자지원비 2% 추가지원 등 지원기준이 개선됩니다.

* 특화산업 : 웰니스식품, 생활의료기기, 구조용신소재, 스포츠지식서비스 산업

■ 지원 대상기업은?

- (수도권 이전기업) 수도권 소재 3년 이상 사업경영, 상시고용 30인 이상 기업이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한 경우
- (신·증설 기업) 국내 3년 이상 사업경영,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, 신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대상업종* 기업이 이전·신증설한 경우
* 대상업종 : 지역선도산업, 지역집중유치업종, 특화산업
- (타시도 이전기업) 타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경영, 상시고용 20인 이상 또는 투자 20억원 이상의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각각 이전한 경우

■ 개선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수도권 이전기업 : 이전기업이 특화산업 업종에 포함되면 당초 기준보다 완화
 - 사업경영 3년 이상 고용 30명 이상 ⇒ 사업경영 3년 이상, 고용 10명 이상
- 신증설 기업 : 대상기업이 특화산업 업종에 포함되면 지원 가능
- 타시도 이전기업 : 이전기업이 특화산업 업종에 포함되면 당초 기준보다 완화
 - 사업 1년 이상, 고용 20명 또는 20억 이상 투자 ⇒ 사업 1년 이상, 고용 10명 또는 10억 이상 투자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도내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특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기여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10

투자유치성과금 지원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.

[자체사업] 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정책팀 (☎033-249-2943)

-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인 투자유치 성과금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하였습니다

■ 성과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도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, 협회·단체, 공무원 등
 - * 투자규모 20억원 이상 또는 이전 후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업을 유치한 경우
- 신청기간 : 기업유치 성사후 5년 이내에 신청가능
- 신청절차 : 성과금 지급신청서 제출(신청자 -> 도 투자유치담당관)
 - * 성과금지급신청서 작성시 기업유치 기여정도를 알 수 있도록 유치추진경위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유치기업의 투자규모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지급 대상	▪ 민간인, 협회·단체, 공무원 등으로 기업유치에 기여한자	▪ 변경없음
지급 한도	▪ 1천억원 이상 투자 또는 1천명 이상 고용기업 유치시 성과금 한도액 ⇒ 2천만원(민간인, 공무원)	▪ 1천억원 이상 투자 또는 1천명 이상 고용기업 유치시 성과금 한도액 ⇒ 1억원(민간인), 2천만원(공무원)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타시도 수준의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한도 상향으로 도내 이전기업 정보제공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3년 9월

11

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.

[자체사업]

글로벌사업단 수출지원팀 (☎033-249-2173)

-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도 수출증진에 기여

■ 지원사업

- 해외물류비 지원(기업당 2백만원 이내, 도내 50개사 이상)
 - 도내기업의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
-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(50개사 이상)
 - 기업이 희망하는 수출시장 바이어리스트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
 - 해외바이어와 화상 수출상담회 통해 국내에서 직접 수출기회 제공
-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수출컨설팅 지원
 - 수출 전문인력이 부재한 도내 기업에 수출계약서작성, 통관 및 선적, 대금회수, 마케팅 사후관리 등 다양한 컨설팅 실시

■ 지원대상

-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 기업
- 도내 공장등록기업 및 수출실적이 강원도로 집계되는 기업
 - ※ 강원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(<http://trade.gwd.go.kr>)으로 신청

■ 기대효과

-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기반조성
-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 마련



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

1. 친환경농산물 생산·유통 활성화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. / 37
2. 소규모 도정공장에 시설·장비를 지원합니다. / 39
3. 임대농기계 현장지원을 강화합니다. / 40
4. 발작물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. / 41
5.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렇게 바꿉니다. / 42
6.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가 간소화됩니다. / 43
7. 소득 유망작목 육성을 지원합니다. / 44
8.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. / 45
9.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합니다. / 46
10.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지역이 확대됩니다. / 47
11. 초지 내 체험·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. / 48
12.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사업을 추진합니다. / 49
13.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합니다. / 50
14.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공급합니다. / 51
15. 「전국 동시어업허가제」가 운영됩니다. / 52
16.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됩니다. / 53
17. 수산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제도를 의무화합니다. / 54
18.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. / 55

1

친환경농산물 생산·유통 활성화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.

[자체사업, 농림축산식품부]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(☎033-249-3561)

-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규모의 점진적 증가와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 따라 인증촉진과 상품성제고를 위한 유통활성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,
- 지력증진과 농업환경 유지보전을 위해 100%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일부 자부담(20%) 사업으로 변경되며,
-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유도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및 인증촉진비 지원 기준을 상향 지원합니다.

어떤 사업인가요?

- **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지원** * 2014년 신규사업
 - 사업량 : 1개소
 - 사업비 : 800백만원(도비 240, 시군비 240, 자부담 320)
 - 지원대상 :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연협회, 생산자단체 등
 - 사업내용 : 친환경농산물 유통·가공 시설장비 설치지원
- **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** * 2014년 신규사업
 - 사업량 : 5개소
 - 사업비 : 50백만원(도비 9, 시군비 21, 자부담 20) * 개소당 10백만원
 - 지원대상 : 친환경농업실천 법인,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
 - 사업내용 : 친환경인증·유기가공식품인증·국제인증 절차 등 교육비 지원
- **녹비작물 종자대 지원** * 지원기준 변경
 - 사업량 : 5,229ha
 - 사업비 : 1,511백만원(국비 604, 도비 121, 시군비 484, 자부담 302)
 - 지원대상 : 녹비작물 재배희망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
 - 사업내용 :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(호밀, 헤어리베치, 녹비보리)
 - 달라지는 내용 : ('13) 보조 100% → ('14) 보조 80%, 자부담 20%

● **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** * 지원기준 변경

- 사 업 량 : 1,158ha
- 사 업 비 : 1,943백만원(국비 139, 도비 287, 시군비 670, 자부담 847)
- 지원대상 : 친환경농업 실천농가
- 사업내용 : 친환경농자재 지원(천적, 미생물, 목초액, 아미노산제제 등)
- 달라지는 내용 : ('13) ha당 1,000천원 → ('14) 유기 2,000, 무농약 1,500

● **친환경농산물 인증축진비 지원** * 지원기준 변경

- 사 업 량 : 2,000건
- 사 업 비 : 600백만원(도비 108, 시군비 252, 자부담 240)
- 지원대상 :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
- 사업내용 : 인증검사비용 지원(토양, 수질, 농약, 인증수수료 등)
- 달라지는 내용 : ('13) 건당 250천원 → ('14) 300천원

■ **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**

-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■ **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**

2

소규모 도정공장에 시설·장비를 지원합니다.

[자체사업]

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 (☎033-249-3565)

- 마을기업 등에서 공동운영하는 소규모 도정시설에 고품질 쌀생산 시설·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시설개선을 도모하고,
-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과 지역브랜드쌀 가치제고,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.

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량 : 1개소 * '14년 신규사업
- 사업비 : 100백만원(도비 15, 시군비 35, 자부담 50)
- 지원기준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- 지원대상 : 마을기업 등 운영 소규모 도정공장 * 개인운영 제외
- 사업내용 :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노후된 가공 및 포장시설 등 업체에서 필요한 시설·장비 선택적 지원

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기간 : 2014년 1월 부터 접수
- 신청절차 : 해당 주소지 시·군 및 읍면동에 신청

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마을공동 생산비 절감 및 공동 브랜드쌀 생산 능력향상
- 시설개선 등으로 환경 위해요소 제거, 고품질쌀 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3

임대농기계 현장지원을 강화합니다.

[자체사업]

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(☎033-249-3567)

- 영농기 필수 농기계를 임대하여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대농기계 현장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.

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량 : 16개 시군
- 사업비 : 480백만원(도비 144, 시군비 336) * 도비 30%, 시군비 70%
- 지원대상 : 시장·군수(농기계 임대사업소)
- 사업내용 : 임대농기계 현장배송 및 응급 수리용 차량지원
* 지원기준 : 30백만원/대, 1톤 화물/수리용 장비함 및 소형크레인 탑재

현장지원 강화방안은?

- 원거리, 여성·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을 위한 임대농기계 배송지원
- 임대농기계 작동요령 현장교육, 수리지원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

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영농기 필수농기계 임대지원을 통한 적기 영농실현과 경영비 절감 및 일손부족 해소
- 농업인 호응도가 높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·효율적 운용
-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 도모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4

발작물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지원합니다.

[자체사업]

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(☎033-249-2647)

- 발작물 주산지에 규모화, 현대화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발작물 생산과 유통계열화 거점으로 육성합니다.

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량 : 1개소
- 사업비 : 1,000백만원(도비 210, 시군비 490, 자부담 300)
- 지원기준 : 도비 21%, 시군비 49%, 자부담 30%
- 지원대상 : 발작물 취급 농협·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
- 사업내용 : 발작물 수확·저장·선별·포장·출하 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

유통기반시설 내용은?

- 저온저장시설 330㎡이상, 정선·선별·포장시설, GAP시설 등

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주산지 우수경영체 중심의 생산·유통계열화로 파워브랜드 육성
- 생산·유통의 패키징하우스 시스템 구축 및 농가소득 안정화도모
- 정선·선별·저장·포장 등 일관처리로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품질향상, 수급안정 등 산지유통구조 개선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5

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렇게 바뀝니다.

[농림축산식품부]

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(☎033-249-2643)

-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신청방식을 개선하여 형평성 있는 비료공급과 농가수요 시기에 맞춘 비료공급을 추진합니다.

유기질비료 신청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기간 : 사업시행 전년 11월 1일~12월 20일
-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
- 신청자격 :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- 지원내용 :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부산물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
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신청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조합 ▪ 신청기간 : 전년12~당년1월 ▪ 농가대표 및 마을대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▪ 신청기간 : 전년11~12월 ▪ 개인(단, 고령자는 대리신청가능)
공급 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월부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월부터
품질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1회 및 자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4회

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재배작목, 재배필지를 기준으로 물량 배정함으로 특정농가에 집중 지원을 방지하며, 개인별 적정한 비료공급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시기를 1개월 앞당김으로 농가수요가 가장 많은 3~4월에 맞춰 적기 공급이 가능합니다.

언제부터 배정확정 및 공급되나요? 2014년 1월

6

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가 간소화됩니다.

[농림축산식품부]

농식품유통과 농식품산업팀 (☎033-249-26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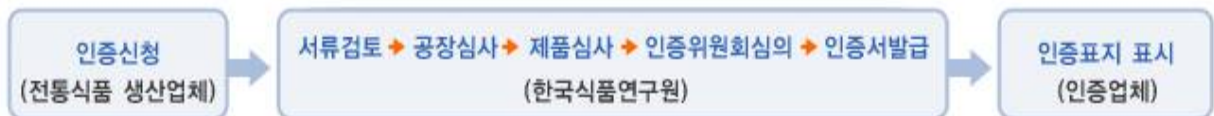
-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통식품 업체가 인력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
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가 무엇인가요?

● 제도개요

-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·가공·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·향·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
-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하고,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음.

● 인증절차



간소화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준	변 경
심사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품질인증 신청 시 공장심사 10개 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장입지, 작업장, 제조설비, 원료조달 및 관리, 공정 및 품질관리, 용수관리, 개인위생, 환경위생, 유통관리, 포장 및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적용 업체는 공장심사 시 4개 중복항목 심사 생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 10개 → 6개 항목 (작업장, 용수관리, 개인위생, 환경위생 항목 생략)
정기 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심사(공장심사, 제품심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사기관 : 한국식품연구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업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정기심사(공장심사) 생략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3년 11월 29일

7

소득 유망작목 육성을 지원합니다.

[자체사업]

농식품유통과 원예산업팀 (☎033-249-2628)

- 기후변화, 신기술 도입 등 영농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배작목의 재편, 전문화규모화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득 유망작목 육성을 지원합니다.

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량 : 20개소
- 사업비 : 20억원(도비 3, 시군비 7, 자부담 10)
 - 지원기준 : 도 15%, 시군 35%, 자부담 50%
- 사업대상 : 지역별 고소득 유망작목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
- 사업내용 : 지역별 시범사업으로 성과가 나타난 소득 유망작목에 대한 생산·유통시설(비닐하우스, 저온저장고 등) 지원

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	변 경
사업대상	▪ 고랭지채소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	▪ 지역별 고소득 유망작목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
대상지역	▪ 고랭지채소 주산지 12개 시·군	▪ 18개 시·군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8

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.

[자체사업]

농식품유통과 원예산업팀 (☎033-249-2628)

-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, 채소류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제고 및 가격안정을 채소류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.

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량 : 4품목(토마토, 풋고추, 오이, 호박)
- 사업비 : 12억원(도비 3, 시군비 3, 자부담 6)
 - 지원조건 : 도 25%, 시군 25%, 자부담 50%
- 사업내용 :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지원
 - 재원조성 :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주관 출하조직체 조성액과 지자체(도, 시·군) 보조를 1:1 매칭펀드로 지원 조성
- 운영주체 : 광역단위 출하조직체
- 대상농가 : 상기 4품목 재배농가 중 출하조직체(광역 또는 회원농협)가 정한 사업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

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	변 경
대상 품목	▪ 2품목(토마토, 풋고추)	▪ 4품목(토마토, 풋고추, 오이, 호박)
지원 조건	▪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	▪ 도비 25%, 시군비 25%, 자부담 50%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9

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합니다.

[자체사업]

축산진흥과 축산경영팀 (☎033-249-2657)

-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 및 축산업 신규 종사자 양성에 기여

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?

- 애·경사, 여행 등 가축을 관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우미로 채용된 사람이 부재기간 동안 가축을 관리해 주는 사업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▪ 대상 축종 : 낙농	▪ 대상 축종 : 낙농, 한우, 양계, 양돈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축산업 특성상 연중 무휴의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 제공 및 경조사 등의 부담 없는 참석으로 축산농가 삶의 질 개선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10

2014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지역이 확대됩니다.

[농림축산식품부]

축산진흥과 친환경축산팀 (☎033-249-2727)

-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·관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사랑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.

■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?

-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(www.animal.go.kr)에 등록하여
-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,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동물 발생 방지

■ 동물등록 의무지역과 등록대상은 어떻게 바뀌나요?

구 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▪ 등록대상지역	▪ 인구 10만이상 시군	▪ 전 시군
▪ 등록대상동물	▪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	▪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 ▪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

■ 동물등록 장소와 방법은?

- 동물소유주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
 - ①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, ②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,
 - ③ 동물인식표 부착 중 선택하여 등록

* 수수료 : 대행수수료 3천원, 무선식별장치 삽입 시술료 7천원, 칩인식표 가격은 종류별 상이

■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- '14.1.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예정 및 미 등록시 과태료부과(20~40만원)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
- 인구 10만이상 시군은 '13년부터 연계·지속 추진
- 인구 10만미만 시군은 법 개정공포('14년 예정)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

11

초지 내 체험·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.

[농림수산식품부]

축산진흥과 친환경축산팀 (☎033-249-2722)

- 산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과 관광·체험 접목으로 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

개 요

- 초지 내 부대시설의 범위에 축산체험시설을 포함하도록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('14. 3예정)

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초지 내 설치 부대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·관리인의 집 - 착유실·창고·건초사·싸이로·급수시설 - 두엄간·가축분뇨 처리시설·운동장 - 그늘막·말 조련용 주로 및 말 조련용 수영장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초지 내 설치 부대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·관리인의 집 - 착유실·창고·건초사·싸이로·급수시설 - 두엄간·가축분뇨 처리시설·운동장 - 말 관련시설(마사, 마방, 관리사, 마장) - 말 관련 주로·수영장 및 부속시설 - 축산체험시설, 농장경관시설 - 간이휴게시설

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축산과 관광이 복합된 축산체험·관광 시설 개발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
-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 인프라 확충(볼거리, 먹거리, 즐길거리)
- 방목장 및 초지 등 자연 경관을 활용한 축산업 관광 자원화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3월

- 체험관련시설 등 세부사항은 농축산식품부장관 고시

12

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사업을 추진합니다.

[자체사업]

축산진흥과 친환경축산팀 (☎033-249-2727)

- 액비저장조 내 슬러지 제거를 통해 이용효율을 증가시켜 고품질 액비 생산이 가능해 집니다.

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량 : 50개소 * '14년 신규사업
- 사업기간 : '14. 1월 ~ 12월
- 사업비 : 200백만원(도비 30, 시군비 70, 자부담 100)
 - 지급기준 : 4백만원/개소(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)
- 사업대상 : 액비유통센터 및 공동자원화 시설에 액비를 반입하는 축산농가 및 액비사용 경종농가
- 사업내용 :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침착 방지용 수중폭기장치 설치 및 슬러지 제거 작업비

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나요?

- 사업을 원하는 축산 및 경종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
 - '14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
- 시군에서는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확정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13

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합니다.

[자체사업]

축산진흥과 동물방역팀 (☎033-249-2654)

-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전문 수의사의 진료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 및 수의사 처방제 정착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한 맞춤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■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?

- 지원대상 : 소 5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
- 신청절차
 - 시군에서 진료병원 선정(강원도 개업 동물병원에 한함)
 - 병 가축 발생 시 농가에서 동물병원 진료 요청
 - 진료 요청을 받은 수의사는 현지 출장하여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고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농가에 발급
 - 진료 농가에서는 진료비 전액을 선 정산하고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진료비 정산서를 시장·군수에게 제출(진료비 지원 요청)
 - 시장·군수는 진료비 지원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진료비 지원

■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지원조건 : 1회 진료비 8만원 이상으로 3회에 한해 지원
 - * 지원 : 1회 진료비 80,000원 이상 시에도 상한액 4만원만 지원
 - 보조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 - * 농가별 3회까지만 지원(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횟수 제한)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14

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공급합니다.

[자체사업]

축산진흥과 동물방역팀 (☎033-249-2655)

- 송아지 폐사의 주요 원인인 설사병 사전예방을 위한 경구투여용 면역 증강제 공급으로 송아지 위축·폐사를 방지하여 생산성 및 사육농가 경영 안정이 기대됩니다.

■ 송아지 설사병 경구투여용 면역증강제는 어떻게 공급하나요?

- 지원대상 : 소규모 번식우(한우·육우·젖소) 농가
- 지원단가 : 10,000원/두
- 신청절차
 - 사업희망자는 시군에 지원 신청
 - 신청 받은 시군은 신청농가 중 “우선순위 선정계획”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
 - 농가별 지원량은 사육두수, 농가신청두수를 감안하여 시군 총 사업비 내에서 결정하여 지원

■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지원조건 : 두당 경구용 면역증강제 1회 투여분(10,000원)
 - * 보조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■ 설사병 예방 지원 기대효과는?

- 송아지 폐사 방지로 축산농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로 경영 안정
- 경영 안정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15

「전국 동시어업허가제」가 운영됩니다.

[해양수산부]

수산정책과 수산개발팀 (☎033-660-8335)

- 연근해 전 업종에 대하여 어업별 허가기간을 통일하는 「전국 동시어업허가제」를 도입하여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 편의를 제공합니다.

어업허가 신청은 언제, 어떻게 하나요?

-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시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의 허가가 유효한 자에 한하여 관할 시,군에 신청 (구비서류 : 기존 허가증)

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종이 어업허가증 발급	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 카트에 어업 정보를 수록한 전자어업허가증 발급
개인별 허가기간 만료시 마다 허가처분	전국 동시어업허가 처분 (2014.1.1 ~ 2018.12.31)

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허가기간 통일로 행정효율 및 어업인 편의 도모
- 기존 어업허가증의 훼손우려가 사라졌으며, 어업허가증 위·변조 방지로 투명성 확보
- 어업인 보관 및 휴대 편의 제공
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 1일

16

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됩니다.

[해양수산부]

수산정책과 유통가공팀 (☎033-660-8347)

-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확대됩니다.

대상업소와 대상품목은 어떻게 되나요?

● 대상업소

-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영업소, 집단급식소 등 수산물 조리·판매 업소

● 대상품목

- 기존(6품목) :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낚지
- 추가(3품목) : 명태(황태,북어 등 건제품 제외), 고등어, 갈치

표시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?

구 분	기 존 (2013.6.28 이전)	변 경 (2013.6.28 이후)
글자크기	업소면적 100㎡ 이상은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, 100㎡ 미만은 그 중 한 개만 표시 / 글자크기는 음식명 1/2이상	면적과 상관없이 사용중인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 /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
섞음비율	섞음 표시 규정은 있으나 표시 순서 규정 없음	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“○○산 과 △△산 섞음” 표시
보관품 표시	냉장고 보관 식재료는 축산물만 표시	냉장고 앞면에 표시대상 농수산물 모두 표시
살아있는 수산물	표시 제외	수족관 등 보관시설 전면에 모든 수산물 표시
표시 “예”	광어매운탕(국내산), 모듬회(우럭:국내산, 참돔:일본산), 낚지볶음(국내산 과 중국산 섞음)	

위반시 처벌규정을 알고 싶어요?

- 거짓표시 : 7년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
-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인터넷 공표 : 거짓표시를 한 자 또는 2회이상 미표시를 한 자의 위반내역 등 인터넷 공개

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? 2013년 6월 28일

17

수산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제도를 의무화합니다.

[해양수산부]

어업지원과 기술인력육성팀 (☎033-660-8329)

- 수산 동물용 의약품의 오·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7종을 지정 처방전 의무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
- 본 지정 의약품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.

■ 수산 동물용 의약품 지정항목

- 추진배경 : 항생제 등 오·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
- 관련법령 : 약사법 제85조 제6항·제7항("12.2.1)
수의사법 제12조의2 제1항("12.2.22)

* 참고 :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소식바다 > 해양수산뉴스 > 보도자료
>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

■ 수산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은 모두 7종

- 마취제 유효성분(2종) : 이소유게놀, 트리카인
- 호르몬제 유효성분(1종) :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
- 항생제 유효성분(4종) : 독시싸이클린, 에리스로마이신, 옥시테트라싸이클린, 스피라마이신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

- 항생제 등의 오·남용 방지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? 2013년 8월 2일

18

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.

[해양수산부]

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사업팀 (☎033-248-6765)

- 환경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 됩니다.

■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개정사유 : 내수면의 환경오염, 수산자원 고갈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
- 개정법령 : 내수면어업법 제19조(유해어업의 금지)
내수면어업법 제25조(벌칙)

■ 금지하고 있는 어업행위는 무엇인가요?

- 내수면에서 폭발물·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행위

■ 처벌 규정은 어떻게 강화되었어요?

- (당초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(변경)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■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? 2013년 9월 23일

IV

Green·Safe 강원도 만들기

1.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. / 59
2.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확대·시행됩니다. / 60
3.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강화됩니다. / 61
4. 「강원도 환경보전기금」 지원을 확대합니다. / 62
5. 물 재이용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합니다. / 63
6. 산지전용허가 제한사항이 완화됩니다. / 64
7. 숲가꾸기 산주 자부담(10%)을 폐지합니다. / 65
8. 사회적 취약계층에 LED조명등을 무상 보급합니다. / 66
9. 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지원을 확대합니다. / 67
10.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합니다. / 68
11. 노유자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됩니다. / 69

1

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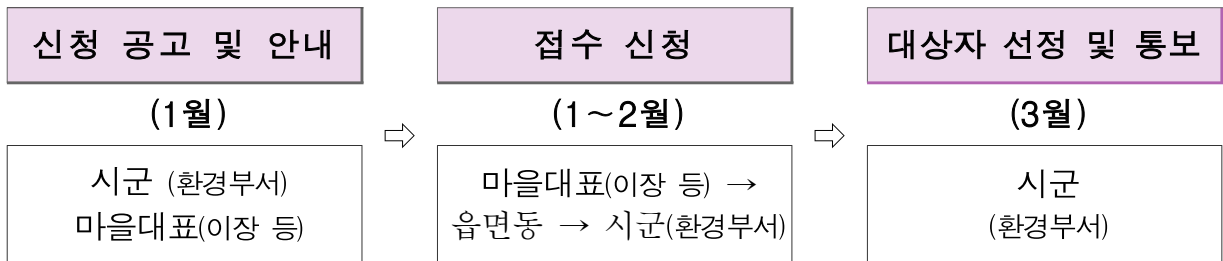
[환경부]

환경정책과 녹색환경팀 (☎033-249-2578)

-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합니다.

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지붕재가 석면슬레이트로 된 주택
- 신청기간 : 2014년 1월 ~ 2월
- 신청절차 : 시군별 홈페이지,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신청방법 게재



■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? 슬레이트 해체 · 운반 · 처리비용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구당 슬레이트 면적 120㎡ 기준 사업비 (240만원) 중 192만원(80%) 지원 ※ 잔여 사업비 48만원은 자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구당 슬레이트 면적 144㎡ 기준 사업비 (288만원) 전액 지원 ※ 자부담 無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 1일

2

석면피해구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.

[환경부]

환경정책과 녹색환경팀 (☎033-249-2578)

- 석면으로 인해 고통받는 건강피해자 또는 석면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급여 지원이 확대됩니다.

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석면질병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유족
- 접수처 : 관할 시·군청(환경부서)
- 인정심의 : 석면피해판정위원회 (한국환경공단)

■ 구제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종 류	지급대상	설 명
요양급여	피해자	▪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
요양생활수당	피해자	▪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매월 일정 금액 지원 (2~5년간 지급)
(특별)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	유 족	▪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대상질병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원발성 악성종피종 ▪ 원발성 폐암 ▪ 석면폐증 (1, 2, 3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원발성 악성종피종 ▪ 원발성 폐암 ▪ 석면폐증 (1, 2, 3급) ▪ 미만성 흉막비후
요양생활수당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질병에 따라 월 23~97만원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질병에 따라 월 29~123만원 지급
요양급여지급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원발성 악성종피종과 폐암 환자에게만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석면폐증과 미만성 흉막비후 환자에게도 지급
특별유족인정 기준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원발성 악성종피종, 폐암과 석면폐증 1급만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석면폐증 1~3급과 미만성 흉막비후도 모두 인정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 1일

3

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강화됩니다.

[자체사업]

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 (☎033-249-3558)

-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환경기준을 이행토록하고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 환경피해를 저감할 예정입니다.

■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지?

-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·승인 등을 할 때 지역주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·예측하여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제도
-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대상사업 및 규모
 - * 대상사업 : 3개사업(공유수면 매립·개간, 산지의 개발, 토석·자갈·광물등의 채취)
 - * 대상규모 :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 규모의 100%미만 50%이상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신 설(2014년)
과태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치명령, 공사중지, 협의 또는 재협의 없이 공사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▪ 평가서 작성계약 분리 발주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또는 전부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▪ 관리대장 현장관리, 책임자 미지정 및 보고 미이행 등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개발사업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됩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하나요? 2014년 7월 1일

4

「강원도 환경보전기금」 지원을 확대합니다.

[자체사업]

맑은물보전과 환경시설팀 (☎033-249-2592)

- 환경보전기금은 전국 최초로 민간환경 시설의 개선 및 확충, 위탁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조성한 기금입니다.

■ 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?

- 용자사업 : 환경관련 8개 법률/ 13종 방지시설의 개선 및 확충
 - * 최대 50백만원(이율 1%, 4년거치, 4년상환), 가까운 농협은행에서 이용 가능
- 보조사업 : 대기·폐수·개인하수·축산폐수 시설의 위탁관리비 지원
 - * 최대 20백만원(해당 시·군을 통해 지원신청), 지원비율에 의해 자부담 분담

■ 확대된 내용은 무엇 인가요?

구 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▪ 용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대 2천만원 까지 ▪ 연2%, 3년거치 4년상환 ▪ 개인하수, 축산폐수 분야 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대 5천만원 까지 ▪ 연1%, 4년거치 4년상환 ▪ 환경 전분야(8개법률/13종시설)
▪ 보조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인하수, 축산폐수 분야 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기, 폐수분야 추가(점진 확대) ▪ 상수도미보급지역 (가정용)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

■ 기금 신청 및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?

- 용자사업 : 매년 1월 공모 및 신청 → 3월 확정 → 사업 종료 후 정산
- 보조사업 : 매년 7월 신청 → 9월 확정 → 다음해 사업 및 정산
 - ※ 해당 시·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사전에 협의된 목적외 사용시에는 지원된 기금은 회수 됩니다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민간부분 환경시설 관리강화로 지속가능한 청정강원 환경조성

5

물 재이용시설 설치대상이 확대됩니다.

[환경부]

맑은물보전과 하수관리팀 (☎033-249-3524)
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'13.7.16)에 따라 '14.7.17일부터 물 재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추가확대됩니다.
- 추가대상 : 온배수 재이용시설, 공동주택, 학교,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, 1일 폐수 배출량이 1,500m³ 이상인 발전시설

■ 물 재이용 시설이란 무엇인가요?

- “물의 재이용”이란 빗물, 오수(汚水), 하수처리수,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, 그 처리된 물을 생활, 공업, 농업, 조경,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
- "물 재이용시설"이란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합니다.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물 재이용 설치대상에 발전수 온배수시설, 빗물이용시설 설치·운영 대상에는 공동주택, 학교,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, 중수도 설치 대상에는 1일 폐수 배출량이 1,500m³ 이상인 발전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.

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물 재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
빗물 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붕면적 1,000m²이상 종합운동장, 실내 체육관 및 공공청사 신·증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붕면적 1,000m²이상 종합운동장, 실내체육관, 공공청사, 공동주택, 학교, 골프장 및 「유통산업 발전법」 제2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신·증축 등
중수도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면적 60,000m²이상 영업용업무용 건축물 ▪ 국가지자체·공공기관 등 개발사업 (도시, 관광단지, 산업단지, 택지개발 등) ▪ 일 폐수배출량 1,500m³이상 공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면적 60,000m²이상 영업용업무용 건축물 ▪ 국가지자체·공공기관 등 개발사업 (도시, 관광단지, 산업단지, 택지개발 등) ▪ 일 폐수배출량 1,500m³이상 공장, 발전시설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7월 17일

6

산지전용허가 제한사항이 완화됩니다.

[산림청]

산림자원과 산지관리팀 (☎033-249-3134)

- 대규모(30만㎡ 이상) 산지 개발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주민편의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제한사항이 완화

■ 개정이유

- 대규모 산지전용 허가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비 등 지역발전 및 국민생활에 제약이 되었던 허가기준을 완화 또는 신설함에 따라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주민의견수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음 - 30만㎡ 이상의 지역·지구 협의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시행 -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- 30만㎡ 이상의 지역·지구 협의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완료 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절차 마련
임업용산지내 행위제한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업용산지내 행위제한 -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불가 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시설 설치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업용산지내 행위제한 완화 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 설치 허용
단독주택신축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산지에서 단독주택 신축시 신청인 소유인 경우만 한정 - 공동소유의 경우 단독주택 신축에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동소유의 산지인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단독주택 신축 가능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대면적 산지전용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 발생 요인 사전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3년 12월 17일

7 숲가꾸기 산주자부담(10%) 없어집니다.

[산림청]

산림자원과 산림녹지팀 (☎033-249-2738)

- 산림의 생태적 건정성과 산림자원의 육성·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·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(10%)이 없어 집니다.

■ 개정이유

- 숲가꾸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전액 부담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산주 자부담금 폐지	▪ 산주 자부담금 사업비의 10% 부담 - 국비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	▪ 폐지 - 국비 50%, 지방비 50%

■ 숲가꾸기 효과는 무엇인가요?

-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이 향상됨
-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증진(나무 직경생장 3배이상 증가)
-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약20% 증가
-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
- 수원함양·맑은 물 공급기능이 향상
- 산사태 등 수해를 예방

■ 숲가꾸기 사업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?

- 시·군 산림부서에 신청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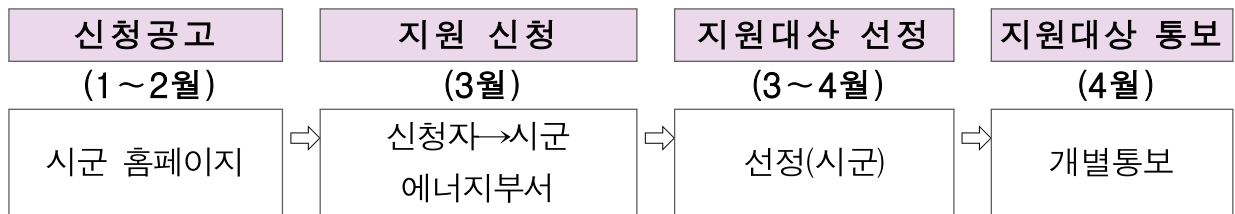
사회적 취약계층에 LED조명등을 무상 보급합니다.

[산업통상자원부] 에너지자원과 신재생에너지팀 (☎033-249-3232)

-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취약계층 주택에 기존의 노후조명등을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무상 교체하여 드립니다.

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
* 기존 조명등의 교체는 가능하나 신설지원은 불가
- 신청기간 : 2014. 1~2월(*2개월 간)
- 신청절차



※ 향후, 세부 신청절차는 시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 예정

■ 교체 대상 조명등은 어떻게 되나요?

- 지원제품 :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LED등(백열등, 형광등 대체)

구분	기존등(형광등, 백열등)	LED 실내조명등
제품사진		
		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9

신재생에너지 주택설치 지원을 확대합니다.

[자체사업]

에너지자원과 신재생에너지팀 (☎033-249-3232)

- 기존에 마을단위(10가구이상)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대상을 개별주택까지 확대합니다.

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신청대상 : 개별 주택 또는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(리, 동) 10가구 이상 마을
 - *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에 규정한 단독주택,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함
- 신청기간 : 2014. 3월(* 1개월 간)
- 신청절차

구 분	신청공고 (1~2월)	지원 신청 (3월)	사업 선정 (3~4월)	설치주 통보 (4월)
개별주택	에너지관리공단, 시군 홈페이지	설치주→에너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→승인완료 후 시군제출	선정(시군)	개별통보
마을단위	시군 홈페이지	마을대표→시군 제출	선정(산업부, 에너지관리공단)	개별통보

※ 향후, 세부 신청절차는 시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 예정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지원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마을단위 신청에 한하여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별주택 및 마을단위 지원
신청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마을단위 : 시군 공고 후 마을단위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별주택 :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▪ 마을단위 : 시군 공고 후 마을단위 신청
지원 단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비 지원 : 총사업비의 40~50% (태양광 40%, 태양열 및 지열 50%) ▪ 지방비 지원 : 정액 추가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태양광 : 200만원 - 태양열 : 200~400만원 - 지 열 : 4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14년 2월중 확정 예정 ▪ 좌동(변경없음)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10

사회적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합니다.

[자체시책]

방호구조과 예방팀 (☎033-249-5145)

- 친 서민 생활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(소화기, 감지기)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
■ 기초소방시설이란?

- “소화기” 및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는 “단독경보형 감지기”를 말함

< 「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」 세트 >

소화기



▶ 세대별, 층별 1개 이상

단독 경보형 감지기



▶ 구획된 공간(방, 거실) 마다 1개 씩

■ 기초생활수급대상 지원 내용은?

- 도내 수급대상 총 37,334가구에 대하여 향후 4년간(2017년까지) 순차적으로 소화기 및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 지원
 - * 37,334가구 중 8,622가구(23%) 기 보급 완료
- 지원 내용 : 소화기 및 감지기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3년 1월(2017년까지)

11

노유자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됩니다.

[소방방재청]

방호구조과 예방팀 (☎033-249-5145)

- 화재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유자생활시설의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화재 등 사고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.

■ ‘노유자생활시설’ 이란?

- 노인, 아동, 장애인 등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가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(복지센터, 유치원 등 이용시설은 제외)

* 노인관련시설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정신질환자시설, 노숙인관련시설 등

■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내용은?

- 설치대상 : 노유자생활시설 전 대상
 - * 주택용도 제외(노인시설은 주택용도 포함)
- 소방시설 : 간이스프링클러, 자동화재탐지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
- 소방시설 설치 후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

■ 설치시기는? 2014년 2월 5일 까지

- 신규대상은 '12. 2. 5부터 시행 중
- 기존대상은 '14. 2. 5까지 의무 설치

■ 기존대상 예산지원은? :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추진 중

- 국비 50%, 도비 15%, 시군 35%
- 시설 관계자가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, 예산지원 신청해야 함

V

정주기반 조성, 지역발전 추진

1.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「지역행복생활권」을 추진합니다. / 73
2.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를 지원해드립니다. / 75
3. 우수 숙박업소를 선정하여 시범지원 합니다. / 76
4. 도내 외국어 통역안내 택시를 시범 운영합니다. / 77
5.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육성합니다. / 78
6. 외국인 이용 음식점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합니다. / 79
7. 농어촌형 디지털 작은 영화관이 설치됩니다. / 80
8. 「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」을 시범 조성합니다. / 81
9.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합니다. / 82
10. 농촌지역 마을개발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. / 83
11. 주거급여(주택바우처)가 개편됩니다. / 84
12. 한옥 건축시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. / 85
13.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교통버스를 제공합니다. / 86
14. 귀농·귀촌 정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 / 87

1

새로운 지역발전정책 「지역행복생활권」을 추진합니다.

[지역발전위원회]

기획관실 지역협력팀 (☎033-249-2297)

- 어디에서나 불편없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입니다.

■ 지역행복생활권이 만들어지면?

● 편리한 생활

- 이웃 시군의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- * 문화·체육시설, 도서관, 화장장 등
- 이동이 편리해집니다.
 - * 버스노선 확충, 요금 단일화, 버스정보시스템 구축, 농어촌버스 운영 등
- 교육여건이 좋아집니다.
 - * 지역거점학교 육성, 학군 조정, 통학버스 노선확대 등

● 안정된 삶

- 일자리 찾기가 쉬워집니다.
 - * 일자리센터 연계운영, 직업교육 공동운영, 중소기업 농어촌인력 일자리 매칭 등
- 의료·복지 사각지대를 줄입니다.
 - * 지역 거점복지센터 운영, 시군간 의료서비스 기능분담 및 특화, 도·농간 의료 서비스 연계 및 원격의료 지원, 긴급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등

● 지자체간 상생발전

- 이웃 시군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높입니다.
 - * 특화산업 육성, 산업 클러스터 조성, 농수산물 공동마케팅, 관광자원 및 브랜드 공동개발 등
- 함께 해서 예산은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- * 광역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, 수질개선, 산림자원 보전·활용, 문화행사 공동개최, 외래종 공동퇴치, 각종 고가 장비 공동임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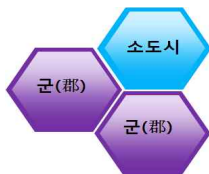
■ 지역행복생활권, 누가 어떻게 만드나요?

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.

- 2~4개의 기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구성합니다.
-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권 발전협의체를 만듭니다.
- 협의체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.
-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계획에 따라 행복 생활권을 만들어 갑니다.

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규모,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, 각 생활권 유형별 특징을 잘 살려서 차별화된 지원이 추진될 계획입니다.

농어촌 생활권



- 인구 10만명 전후의 2~3개 농어촌 시 또는 군으로 구성
-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들끼리 대등한 연계 생활권을 설정하여 서로 기능을 분담하도록 구성되는 생활권

도농연계 생활권



- 인구 50만~10만 명 전후의 중소도시와 주변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
- 지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주변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는 중소도시 생활권

중추도시 생활권



-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주변 중소규모 도시로 구성
- 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,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결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생활권

■ 지역행복생활권, 추진은 어떻게 하나요?

- 중앙부처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·패키지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.
- 생활권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합니다.

2

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
[자체시책]

자치정책과 민간협력팀 (☎033-249-3033)

- 이웃간의 소통을 돕고 사라져버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위해 구성한 소규모 공동체(동아리)를 지원해드립니다.

■ 누가,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신청대상 : 시·군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단체

구 분	특 징	예 시
1단계 (동아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커뮤니티 기반이 미약한 단계 ▪ 주민모임 활성화, 마을사업 발굴 ▪ 주민모임 운영, 동아리 활동 단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모(육아)커뮤니티 활동 ▪ 동아리활동(김치나눠주기, 마을장독대) ▪ 텃밭가꾸기, 마을 청소 등
2단계 (마을공동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단계 ▪ 마을사업 구체화로 사업 추진 ▪ 소규모 소득사업이 가능한 단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마을축제, 마을극장, 마을라디오 운영 ▪ 안전마을, 에너지자립 마을 ▪ 마을 도서관, 동네부엌 운영 등

- 제출서류 : 사업 제안 단체(동아리)소개서 및 사업제안서
- 제출처 : 시·군 마을공동체 담당부서
- 선정방법 : 마을공동체 위원회 및 행정협의회를 거쳐 심사·선발

■ 얼마나,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지원 : 147,000천원

구 분	지원액(천원)	지 원 규 모	비 고
동아리 지원	5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총 25개소 * 시(14개소), 군(11개소) 	개소당 평균 2,000천원
마을공동체 지원	97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8개소(시·군당 1개소) 	개소당 평균 5,000천원
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: 18,000천원

동아리 : 5개소(8,000천원)			마을공동체 : 6개소(10,000천원)		
최우수(1)	우수(1)	장려(3)	최우수(1)	우수(2)	장려(3)
3,000	2,000	각 1,000	3,000	각 2,000	각 1,000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2월

3

우수 숙박업소를 선정하여 시범지원 합니다.

[자체사업]

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(☎033-249-2519)

-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경기 관람객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편안하고 수준 높은 우수 숙박시설을 확보 육성

■ 우수 숙박시설은 무엇인가요?

- 대상업소 : 펜션, 모텔, 민박, 전통한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우수업소
*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중 관광진흥법의 우수 숙박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
- 목 표 : 2014년 시범 50개 업소, 2018년까지 200개 업소 선정
- 선정기준 : 7개 항목(외국인 서비스 가능, 요금표 게시, 신용카드 결제시스템, 프론트, 주차장 등 개방형 접객공간 구비)
- 선정절차 : 신청(온라인 또는 우편물) ⇨ 심사(서류, 방문) ⇨ 선정 ⇨ 재심사(2년 단위 정기적으로 실시)

■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도 인증로고 사용 : "Good Stay in Gangwon"(가칭)
- 홍보안내 지원 : 팸플릿 제작, 관광홈페이지, 홍보물 등 우선 수록
- 마케팅 지원 : 해외 여행업체 팸투어, 국내외 관광객 유치
- 기타 시설환경·서비스 개선, 외국어 안내표기 지원 등

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
- 별도 서식에 의해 온라인 및 서면으로 도 관광부서에 제출
※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시달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7월(예정)

4

도내 외국어 통역안내 택시를 시범 운영합니다.

[자체사업]

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(☎033-249-3331)

- 통역안내택시 1,000대를 시범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의사소통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합니다.

■ 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목적 :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광접점(택시, 음식점, 숙박업소 등)에 외국어 통역안내서비스 구축
- 사업기간 : 2014년 ~ 2017년
 - 2017년까지 통역안내택시 총 3,000대 운영 목표
 - 향후 음식점, 숙박업소에도 확대 운영 예정
- 사업위치 :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및 외국인 관광객 다수 방문지역
 - 춘천시, 원주시, 강릉시, 속초시, 평창군, 양양군 등

■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택시 승차 후 기사님의 휴대전화를 통해 통역원에게 목적지와 필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면 통역원이 기사님께 알려드립니다.

■ 어떤 언어가 지원되나요?

- 7개 국어(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러시아어)

■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? 2014년 6월(예정)

- 평일 : 오전 7시 ~ 오후 10시
- 주말 및 공휴일 : 오전 8시 ~ 오후 6시
 - * 서비스 시간은 운영 업체와 협의 중(변동 가능)

5

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육성합니다.

[자체사업]

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(☎033-249-3331)

-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내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주요관광지를 안내합니다.

■ 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목적 :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육성, 도내 관광지 및 주요 행사장에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안내 실시
- 사업기간 : 2014년 상·하반기(육성 교육 2기수 운영)
- 사업내용 :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 교육 실시
 -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
 - 전 도민 관광요원화를 위한 소양교육 실시(분야별 전문가 특강)
 - 주요 관광지 현장교육 등
- 교육운영
 - 교육인원 : 250명
 - 운영방법 : 주 1회, 12주 교육(이론교육 8주, 현장실습 4주)
 - 교육비 : 무료(전액 도비 지원)
- 교육대상 :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도민

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강원도관광협회 또는 시·군별 웰컴투추진협의회를 통해 신청

■ 언제부터 시행하나요? 2014년 3월(예정)

- 1기(125명) : 2014년 4월 ~ 6월
- 2기(125명) : 2014년 8월 ~ 10월

6

외국인 이용 음식점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합니다.

[자체사업]

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(☎033-249-3331)

-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설치, 외국어 안내문 비치, 환경 개선 등 기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■ 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대상 : 도내 18개시군 음식점
- 사업내용 : 음식점 시설 및 환경 개선비용 지원
 - 외국인 이용환경 개선 : 테이블 개선(좌식 → 입식), 외국어 안내문 비치
 - 시설 개선 : 도배, 화단 설치 등
- 사업기간 : 2014년
- 지원개소 : 9개 업소
- 선정방법 : 공모를 통한 신청서 심사
- 사업비 : 180,000천원(도비 90,000, 시군비 45,000, 자부담 45,000)

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해당 지역 시·군청에 신청서 제출
 - 신청서 접수(시·군) → 지역별 업소 추천(시·군) → 선정(도)

■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해당 업소의 연간 외국인 방문자 수, 업소의 사업 추진 능력 등

■ 언제부터 시행하나요? 2014년 3월(예정)

- 지원업소 선정 : 2014년 3월
-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: 2014년 3월 ~ 12월

7

농어촌형 디지털 작은 영화관이 설치됩니다.

[문화체육관광부]

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(☎033-249-3308)

- 디지털 개봉영화관(CGV, 롯데 시네마 등)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의 영화관을 설치하여 문화보급 등 “삶의 질 향상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■ 어떤 사업인가요?

- 영화관이 없는 시군(13개 시군 : 춘천·원주·강릉·동해·속초시 제외)에 영화관을 설치
 - ※ '13년 : 홍천·영월·화천군 추진
 - 설치지역 : 3개 시군(삼척시, 평창군, 철원군)
 - 설치규모 : 시군별 1개소(30~50석 내외 영화관, 2개관)
 - 설치방법 : 기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리모델링
 - * 복지관·문화예술회관·도서관·박물관 등 기능상실 내부공간을 최대한 활용

■ 강원도 영화관 1호점(홍천점)이 탄생!

- 홍천군 홍천읍 연봉도서관내 건립 : 2014년 4월(예정)
 - * 도서관을 주기능으로 하는 복합시설(열람실, 문화교육실, 전시실, 영화관 등)
 - 위 치 :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34-11번지
 - 영화상영 : 1일 5~6회, 2개 상영관
 - 상 영 관 : <1관> 109㎡, 58석 <2관> 78㎡, 40석



■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은?

- 저렴한 관람료의 영화감상을 통한 농촌·도시간 문화격차 해소
 - 청소년 건전 여가 환경조성 → 강원도교육청 사업비 일부지원
 - '통합문화이용권' 사용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- 작은 영화관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추진

8

「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」을 시범 조성합니다.

[자체사업]

관광정책과 관광개발팀 (☎033-249-3151)

- 현대화·디지털화된 도시를 벗어나 재래 아날로그 방식의 마을을 조성하여 오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색있는 힐링관광지를 개발합니다.

■ 어떤 사업인가요?

- 사업내용
 - 도내 두메산골에 전기·통신없는 오지체험마을을 조성
 - 농·산촌 공가를 리모델링하거나 흙집, 너와집, 귀틀집, 초가집 등 특색있는 재래가옥을 신축
 - 헛간, 방앗간, 뒷간, 소여물, 물펌프, 아궁이 등 재래식 부대시설과 나물재배 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농장 등을 설치
- 사업기간 : 2014년
- 사업비 : 500백만원(도비 250, 시군비 250)
- 추진방법 : 시·군 공모사업

■ 오지체험마을은 어디에 만드나요?

- 시·군에서 신청한 대상지 중에 1개소를 선정(시범)하여 조성합니다.
※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■ 오지체험마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?

- 프로그램 일정 : 2박 3일, 3박 4일 등 다양한 코스
- 프로그램 대상 : 가족단위, 동호회, 직장 등 소규모 그룹단위
- 운영주체·방법 : 마을 위탁 운영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2월(운영은 2015년부터)

9

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합니다.

[자체사업]

농촌정책과 농업경영팀 (☎033-249-2705)

- 도내 247개 농어촌체험마을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시군단위 통합 네트워크 구축으로 맞춤형 상품 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.

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사업내용 : 시군단위 통합 맞춤형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신청대상 : 시군별 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 구성이 가능한 시·군
- 추진절차 : 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 구성 →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
→ 협의회를 통한 맞춤형 농촌체험관광 운영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('13까지) 마을단위 개별 농촌체험관광 추진
- ('14부터) 시군단위 통합 농촌체험관광 추진으로 공동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“테마형 농촌체험 수학여행 프로그램” 공동 개발로 기존 2개월(7~8월)에서 7개월(4~6월, 9~10월) 이상 성수기 연장으로 방문객 확대에 기여
- 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는 사계절 농촌체험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맞춤형 네트워크 체험상품 개발·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
- 4개 부처 247개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 통합 운영을 위한 시군별 농어촌체험관광협의회 구성으로 정보교환 및 공동발전 도모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10

농촌지역 마을개발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.

[농림축산식품부]

농촌정책과 농촌개발팀 (☎033-249-2613)

-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개발사업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여 농촌사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.

■ 신규로 확대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?

● 농촌마을 지역경관 조성

- 사업규모 : 1개 마을, 20억원(마을당 20억원, 2년간 분할지원)
- 사업내용
 - H/W : 소공원 조성, 마을저수지 정비, 실개천 정비, 산책로 조성, 가로수 정비 등
 - S/W : 기본·시행계획 수립, 경관형성계획 수립, 마을경관 유지, 주민교육 등

● 농촌마을 지역창의 아이디어

- 사업규모 : 4개 마을, 78.9억원(마을당 약 20억원, 2년간 분할지원)
- 사업내용
 - H/W : 특산물 제조·가공시설, 농촌관광·체험시설, 마을경관 개선, 귀농·귀촌자 정착지원, 도농교류 촉진 시설 등
 - S/W : 기본·시행계획 수립, 마을 및 농특산물 홍보, 마을운영 교육 등

● 농촌개발 지역역량강화 지원

- 사업규모 : 8개시군, 4억원(시군당 50백만원)
- 사업내용 : 주민·공무원 교육지원, 전문컨설팅 지원, 주민역량 진단, 선진사례 견학, 마을활성화 프로그램, 예비계획 수립 등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- 사업신청 : 읍·면 주민센터 또는 시·군 농정부서로 직접 방문 신청

11 주거급여(주택바우처)가 개편됩니다.

[국토교통부]

건축주택과 주택팀 (☎033-249-2842)

- 저소득층의 거주형태, 임대료 수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주거지원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 및 지급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거비 지원제도로 개편됩니다.

■ 주택바우처 신청 어떻게 하나요?

- 지급대상 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이하
 ※ 소득인정액 :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시행기간 : '13년 사업모델 확정 후 '14년 10월 시행
- 신청방법
 - 읍면동에서 접수 ⇒ 시군구(사업팀)로 전달
- 지원내용
 - 임차가구 : 임대료 수준(지역별, 가구별)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
 - 자가가구 : 주택상태조사 등을 통해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현 행 (2012년)	개 편 (2013년)
근거법령	국민기초생활보장법	주택법+국민기초생활보장법
소관부처	보건복지부	국토교통부
지급대상	소득인정액의 33%이하 (73만가구)	소득인정액의 43%이하 (97만가구)
가구당 월 평균지급액	8만원	11만원

■ 언제부터 시행하나요? 2014년 10월(예정)

12

한옥 건축시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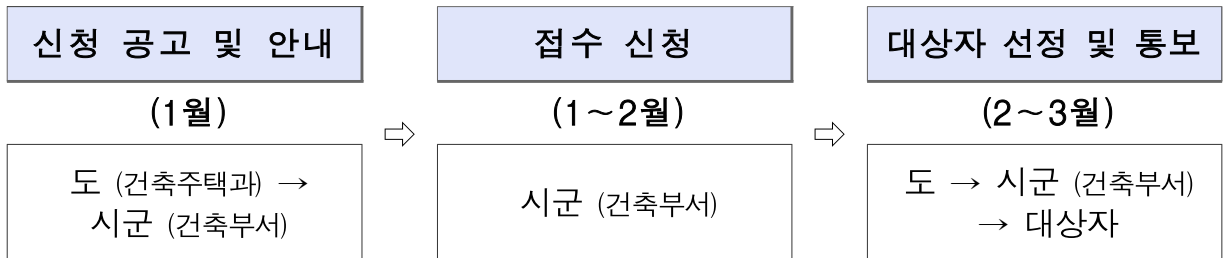
[자체시책]

건축주택과 경관디자인팀 (☎033-249-2372)

-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·발전과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옥 건축시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.

■ 어떤 사업인가요?

- 기 간 : 2014년 ~ 2023년 (10년)
- 총사업량 : 총 300동 (연간 30동)
- 총사업비 : 총 90억원 (도비 45, 시군비 45)
- 지원자격 : 신청일 이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
- 지원대상 : 건축 바닥면적 60㎡ 이상 (신축기준·규모별 차등지원)
- 신청절차



※ 강원도 및 시군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예정

■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보 조 금 : 호별 최대 3천만원 지원
- 용 자 금 :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시 용자금 5천만원 우선 지원
- 기타지원 : 10호이상 한옥마을 조성시 기반시설 설치 지원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13

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교통버스를 제공 합니다.

[자체사업]

도로철도교통과 교통관리팀 (☎033-249-2770)

- 농어촌지역 인구감소,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교통서비스 제공
- 농어촌주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지자체의 버스재정지원 부담

■ 농어촌지역 대중 교통수단은 어떻게 이용하나요?

- 이용대상 : 농어촌 지역 벽지, 오지 주민 등
- 이용기간 : 2014년 6월부터
- '14년 수요조사를 실시, 대상지역 선정(시군당 1대 시범운영)

■ 도입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내 용 (2014년)
이용대상	▪ 농어촌지역으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(오지, 벽지 등)
운영방식	▪ 지역주민단체, 협동조합 등에 위탁운영 ▪ 시범운영 후에 연차별 확대실시 계획임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6월(예정)

14

귀농·귀촌 정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

[농촌진흥청]

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(☎033-248-6117)

- 귀농·귀촌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우수인력을 강원도로 유입하고 지역 정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.

■ 어떤 사업인가요?

- 귀농·귀촌(희망)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,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·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교육대상 : 귀농·귀촌자(5년 이내), 희망자(소외계층 포함)

■ 강화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- (초기) 도시민 희망자 기초교육 : 3기 150명(25시간 내외)
 - 수도권 현지 야간 이론교육 및 도내 성공정착 농가 농장체험
 - 강원 귀농·귀촌 정책 및 지원안내, 창업계획서 수립 등
- (진입) 귀농대학 운영 : 30명(4~12월/100시간 내외)
 - 조기정착을 위한 중급교육(전략작목 영농기술, 마케팅 등)
 - 현장교육, 실습강화 → 현장적용도 증대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
- (정착) 시군센터 작목별 심화교육 : 2분야 470명
 - 전문교육(400명) : 농업기술+경영+창업 등 맞춤 교육
 - 실습훈련(70명) : 성공 귀농인 농장입주(5개월 이상), 전문기술 습득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귀농·귀촌패턴에 따른 단계별 맞춤 교육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 - 연간 확대목표 : ('13) 507 → ('14) 650 → ('16) 800 → ('18) 1,000명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2월(예정)

VI

도민 편의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

1. 취득세는 인하되고 지방소비세는 인상됩니다. / 91
2. 지방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됩니다. / 92
3. 지방계약 전 과정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. / 93
4.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를 본격 시행합니다. / 94
5. 공공기관 생산 문서, 원문 그대로 공개됩니다. / 95
6.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수수료 환급절차가 간소화 됩니다. / 96
7. 공공데이터의 주인은 도민입니다. / 97
8.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. / 98
9.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로 종합공부를 발급합니다. / 99

1

취득세는 인하되고 지방소비세는 인상됩니다.

[안전행정부]

세정과 세정팀 (☎033-249-2319)

- 주택유상거래에 한하여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·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.

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① 취득세율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6억원 이하 1주택 2% ▪ 6~9억원 이하 2% ▪ 9억원 초과 다주택 4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6억원 이하 1% ▪ 6~9억원 이하 2% ▪ 9억원 초과 3%
② 지방소비세 세율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가가치세의 5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가가치세의 11%

취득세 인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주택 유상 거래자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을 인하 합니다.

취득세율 영구인하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?

- 정부 대책 발표일인 2013년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함에 따라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주택거래자들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취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?

- 대 상 : 2013년 8월 28일 이후 주택유상거래자
- 신청기간 : 관할 시·군에서 별도 안내 공지
- 신청절차 : 해당 시·군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

2

지방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됩니다.

[안전행정부]

세정과 세무지도팀 (☎033-249-2295)

-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됩니다.

■ 어떻게 진행되나요?

- 개편세목 : 지방소득세
- 시행시기 : 2014. 1. 1이후
- 개편내용
 - 소득·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을 지방세로 따로 적용함으로써
 - 국세감면 등 조세정책에 영향받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체계 개편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지방 소득 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고납부 : 국세청(세무서) 및 각 시군 ▪ 납부세액(부가세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 결정세액의 10% - 소득세 결정세액의 1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고납부 : 국세청(세무서) 및 각 시군 ▪ 납부세액(독립세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 결정과표에 1.0~2.2% - 소득세 결정세액의 0.6~3.8% ※ 납세자 추가부담 없음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, 복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지방재정이 전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 1일

3

지방계약 전 과정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.

[안전행정부]

회계과 계약관리팀 (☎033-249-2332)

-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계약의 전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.

■ 계약과정의 공개란 무엇인가요?

- 발주계획, 입찰, 계약,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, 감독, 검사, 대가의지급 등 입찰, 계약,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,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

■ 지방계약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개 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<'13.8.6 개정 '14.2.7 시행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계약과정의 공개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주계획, 입찰, 계약,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, 감독, 검사,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공개
동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중 <'14.2.7 시행예정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계약 전 과정 공개의 구체적 기준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단계 : 발주계획, 입찰공고·개찰결과, 계약체결·변경, 대가지급, 감독, 준공검사 등 계약과정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14.2.7 시행 예정 - 2단계 : 하도급 대가 및 근로자 임금 지급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15.1.1 시행 예정

■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- 입찰·계약 전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
1단계는 2014년 2월부터, 2단계는 2015년 1월부터 시행(예정)

4

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를 본격 시행합니다.

[자체시책]

자치정책과 행정팀 (☎033-249-2981)

- 인권관련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인권증진센터 설치 및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■ 인권증진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?

- 인권침해 사례 접수·상담 및 구제활동
-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, 인권보호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 제공
-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

■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
- 문서(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을 포함), 구술,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센터 내 옴부즈맨에게 신청

* 상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

■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?

-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방향, 분야별 인권과제, 주요목표, 이행 전략, 재원조달 방안 등 포함
-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후 매년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로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

5

공공기관 생산 문서, 원문 그대로 공개됩니다.

[안전행정부]

총무과 기록관리팀 (☎033-249-2255)

-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중 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한글·엑셀·파워포인트 등 원문형태 그대로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립니다.

■ 무엇을,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- 대 상 : '11년부터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적 문서중 공개로 분류된 정보
- 공개형태 : 한글·엑셀·파워포인트·PDF 등 원문형태 그대로 제공
- 이용절차 : 일반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시스템(open.go.kr) 접속, 정보 목록을 검색하여 공개여부 확인, 원문조회 이용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정보공개 이용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보공개시스템 접속→정보공개 청구→공개결정통지→통지서확인→수수료 결제→정보공개(10일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보공개시스템 접속→공개여부 확인→원문조회선택→원문조회
공개정보 제공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글·엑셀·파워포인트 등 → PDF 파일로 변환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글·엑셀·파워포인트·PDF파일 등 원문형태 그대로 제공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3월 1일

6

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수수료 환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[자체시책]

총무과 교육고시팀 (☎033-249-2548)

-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환급청구서를 폐지하는 등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, 응시생들의 수수료 환급에 따른 불편을 없애겠습니다.

■ 환급절차가 어떻게 간소화 되나요?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무원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, 수수료 환급을 신청하면 검토후 수수료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음
 - 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족
 - 응시원서 수수료 : 8·9급 5,000원, 7급·연구지도사 7,000원
- 기존에는 수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청구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환급절차가 복잡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하고, 환급률도 저조
- 내년부터는 환급청구서를 따로 받지않고, 도에서 행정정보전산망을 직접 활용 하여 저소득여부 조회 후 환급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환급 단계	3단계	2단계
환급 절차	① (응시자)원서 접수시 수수료 납부 ⇒ ② (응시자)수급자 증명서 첨부·환급청구서 작성, 우편청구 ⇒ ③ (강원도)청구서 검토후 수수료 환급	① (응시자)원서 접수시 수수료 납부 및 입금계좌 등 개인정보 사전동의 ⇒ ② (강원도)행정정보 전산망 활용, 저소득 여부 조회후 환급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3월 이후 응시원서 접수분 부터

7

공공데이터의 주인은 도민입니다.

[안전행정부]

정보화담당관실 정보기획팀 (☎033-249-2138)

- 공공데이터의 주인은 도민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.

■ 공공데이터는 무엇인가요?

- 공공데이터는 국가 및 강원도가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DB로 구축 보관중인 자료임
 - * 강원도 보유건수 : 821건(2014년까지 421건 개방 예정)
 - *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점
 - 정보공개 : DB로 저장되지 않는 일반 문서 및 자료(도민 활용 불가)
 - 공공데이터 개방 : DB 또는 엑셀로 저장되어 있으며 가공이 가능하고 활용시 별도의 제약이 없음
-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됨

■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?

구분	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데이터 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공데이터 개방 기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방을 위한 법적근거 부족 - 각종 개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개방 기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(2013.10.31일) - 모든 공공데이터는 국민이 것임

■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? 2014년 1월

■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회원가입후 다운로드(<http://data.gwd.go.kr>)
- 미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회원가입후 신청 요청(<http://data.gwd.go.kr>)

8

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.

[안전행정부]

토지자원과 새주소부동산팀 (☎033-249-2358)

- 기존의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.
- 관공서·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시는 물론 우편·택배·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■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요?

-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,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입니다.

* 도로명주소 표기법



■ 지번주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?

구 분	지번주소 (~2013년)	도로명주소 (2014년~)
단독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240-3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933-4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9(후평동)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18
업무용빌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0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, 00호(봉의동)
공동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529-7 00아파트 00동 00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-7, 00동 00호 (후평동, 00아파트)

■ 내 도로명주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?

-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. ☞ www.juso.go.kr
- 스마트폰에서 찾아보세요. ☞ 주소찾아 앱(App)
-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세요. ☞ 포털사이트 검색창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 1일

9

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로 종합공부를 발급합니다.

[국토교통부]

토지자원과 공간정보입지팀 (☎033-249-3465)

-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, 지적도,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“부동산종합증명서”를 제공합니다.
-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보는 맞춤형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.

■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란 무엇인가요?

- 2개 부처, 5개 법령에 의한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, 부동산종합공부를 발급하게 됩니다.

* 18종 부동산 공부

지적 7종	건축물 4종	토지 1종, 가격 3종	등기 3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토지(임야)대장 ▪ 지적(임야)도 ▪ 대지권등록부 ▪ 경계점좌표등록부 ▪ 공유지연명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건축물대장(일반건축물) ▪ 건축물대장(총괄표제부) ▪ 건축물대장(집합표제부) ▪ 건축물대장(집합전유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▪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▪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▪ 공동주택가격확인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토지등기부등본 ▪ 건물등기부등본 ▪ 집합건물등기부등본

■ 달라지는 내용

기 존 (2013년)	변 경 (2014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부를 개별 발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를 통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『부동산종합증명서』로 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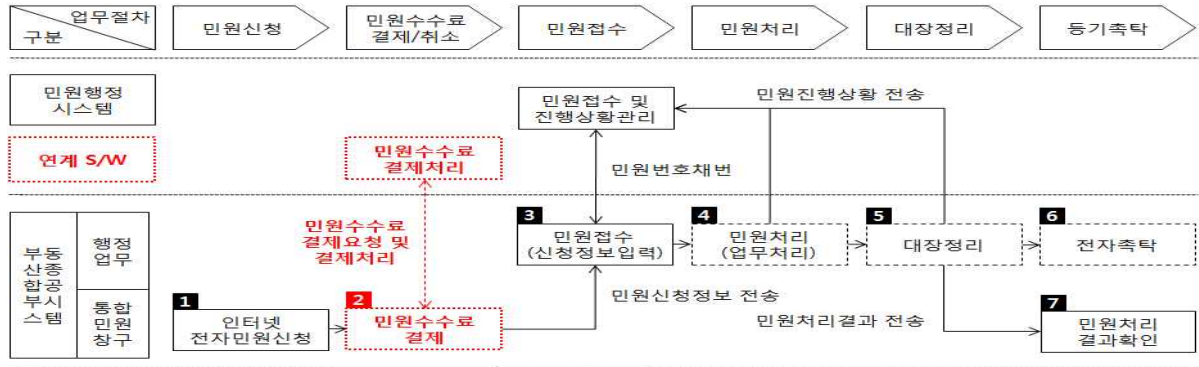
《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수수료 》

대법원 부동산등기시스템 민원수수료	민원24		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민원24와 동일 (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무료)
	민원수수료	부가수수료(을)	
열람 700원	500원 이하	50 원	
발급 1,000원	500 ~ 3,000원	90 원	
민원수수료에 부가수수료 포함	3,000원 이상	민원수수료의 4%	
	민원수수료+부가수수료 합산청구		

■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 2014년 1월 18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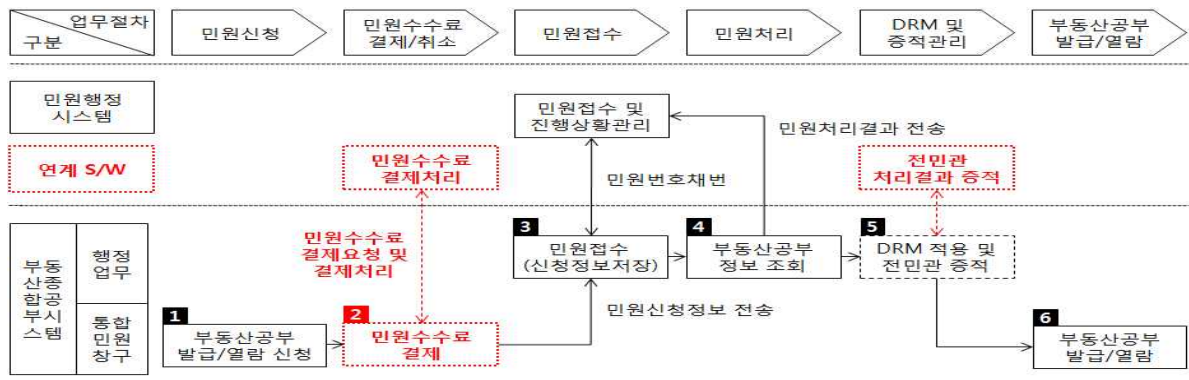
[전자민원신청 및 부동산공부 열람/발급 업무흐름도]

□ 부동산 통합민원창구 전자민원신청 업무흐름도



- ① 민원인이 통합민원창구(인터넷)로 전자민원 신청
- ② 민원수수료 결제 요청 및 처리 (Web 기반 PG 모듈 활용)
- ③ 민원신청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송 후 민원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민원번호 채번(민원접수 처리)
- ④⑤⑥ 민원처리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 후 민원진행상황 및 민원처리 결과를 통합민원창구로 전송
- ⑦ 민원인은 통합민원창구에서 민원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 확인

□ 부동산 통합민원창구 부동산공부 열람/발급 업무흐름도



- ① 민원인이 통합민원창구(인터넷)로 부동산공부 열람/발급 신청
- ② 민원수수료 결제 요청 및 처리 (Web 기반 PG 모듈 활용)
- ③ 민원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민원번호 채번(민원접수 처리)
- ④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공부 정보조회
- ⑤ 발급/열람 부동산공부에 대한 DRM 적용 및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발급물의 증적 처리
- ⑥ 부동산공부 발급 및 열람



MEMO

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.



MEMO

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.



MEMO

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.



MEMO

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.



MEMO

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.